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다68211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재판경과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다68211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8. 28 선고 2013나11004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8. 20 선고 2011가단67606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A

피고, 상고인B

판결 선고 2015. 11. 26.

원심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4. 8. 28. 선고 2013나1100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농가주택이 철거된 후에 신축된 것으로, 이 사건 농가주택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로서 토지 임대차의 효력을 원고에게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거나 피고에게 임차권을 설정하기로 묵시적인 합의를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유탈, 심리미진, 석명권 불행사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박보영

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신

주심대법관권순일